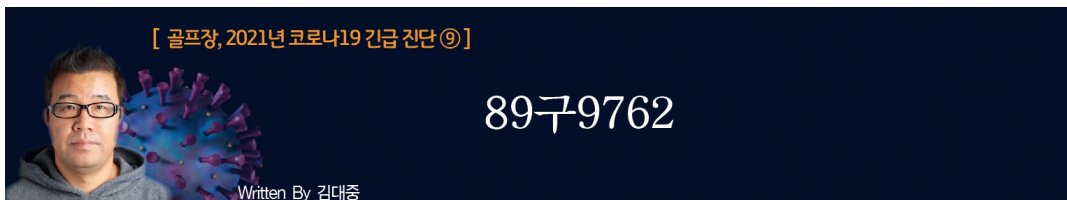


[골프장, 2021년 코로나19 긴급 진단 ⑨] 89구9762

레저신문 승인 2021.02.16 18:40



1989년은 해외 여행이 완전 자유화 되었고, 서울지하철 노조의 파업으로 2주일동안 1호선을 제외한 전 구간이 운행 중단되어 노조원 6명이 해임되었다. 최저임금제도를 10인 이상 모든 산업체로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었던 해이기도 하다. 국외로는 중국의 천안문 사태와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폴란드의 자유노조가 총선에 승리한 해이기도 하다.

위 사건으로 본다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자유화 물결과 노동자 권리에 대한 요구가 거대한 흐름이었다. 한국은 정치 사회적으로 진보세력의 탄압이 본격화된 해이며, 학생운동과 노동운동 현장에서는 언제나 공권력이 투입되었으며, 공안사건들이 늘어나던 암울한 해이기도 하다.

1989년은 국제 노동운동권에게는 노동절이 처음 제정된지 100년이 된 '메이데이 100주년 기념 해'였지만, 한국에서는 한국전쟁 이후로 단절되었던 메이데이를 되살리는 메이데이 쟁취의 해이기도 했다.

1989년은 골프장업계와 캐디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역사적인 해이다.

역사적 사건의 시작은 유성CC 캐디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노동조합을 유성구청에 설립 신고하고, 이를 유성구청에서 설립 허가를 득하면서 시작된다.

사건번호 89구9762는 골프장의 경기 보조인(캐디)이 유성구청을 상대로 노동조합법 제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를 묻는 캐디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번호다. 89구9762에는 당시 캐디가 되는 방법, 역할, 골프장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대단히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캐디 스스로가 자신의 권익을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법의 판단을 받았던 캐디 역사에 있어서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

아래는 89구9762번에 대하여 서울고법에서 1990년 02월 01에 선고한 판결 요지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란 타인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골프장 내장객의 경기를 보조하는 경기보조인(캐디)이 골프장운영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위 회사의 지시에 따라 특정 내장객과 조를 이루어 그들이 경기하는 동안 골프가방을 운반하는 등으로 그들을 도와 주고 그 대가로 내장객의 골프장입장료(그린피)에 포함된 봉사료(캐디피)를 전달받는 이외에 경기종료후 내장객이 임의로 주는 봉사료를 지급받을 뿐 위 회사로부터는 어떠한 명목의 임금이나 급료도 지급받지 아니하였고 위 회사 또한 그들의 수입금액에 관하여 전혀 관여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수입액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세도 원천 징수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경기보조인들은 골프장운영회사의 중개로 내장객과 고용 내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내장객의 경기를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노동조합법 제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그들이 위 회사로부터 출근시간, 근무 상태, 경기과정에서 생긴 잔디 파손 부분의 손질이나 청소 등에 관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지시, 감독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위 골프장시설을 이용함에 부수하여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그들과 위 회사 및 내장객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수 없다.

위 판결문의 요지는 "캐디는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법의 판단이다.

즉, 캐디는 골프장 운영자의 중개로 골프장 고객과 고용 내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의 경기를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로 본 것이다. 이 때만해도 캐디가 캐디피를 골프장운영자에게 5천원을 받고, 골프장고객에게 1만원을 받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캐디피는 전액 고객이 부담하는 관계로 변하였다.

그렇다면, 왜 1989년 유성컨트리클럽에 소속된 캐디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했을까?

1989년 5월경 골프장 식당 직원들이 시간외 수당 문제로 회사 측과 협상이 결렬되어 식당 문을 닫았다. 그 여파로 캐디들이 아침 식사를 못하는 나비의 날개 짓 즉 나비효과의 시작되었고, 이 일을 계기로 캐디들은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단체행동을 벌였다.

당시 캐디들이 제기했던 요구 사항은 캐디피 인상, 장기 근속자에 대한 격려금 지급, 한달에 2일의 휴무 제공, 조장 직선제 등이었다. 그러나, 골프장 측은 캐디들이 조장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이에 캐디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1989년 6월 4일 유성관광개발컨트리클럽노동조합 설립 총회를 개최하고 1989년 6월 23일 유성구청으로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 받았다. 합법적 노동조합이 된 것이다.(계속)

▲김대중

•(주)골프앤 공동대표•건국대학교 국제무역학과 박사과정 수료

•미국UC Berkeley Extension 수료 •일본 국립 츠쿠바대학(筑波大學) 경영정책과 석사과정 특별연구생 •한국무역협회, 홍익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강사 역임

•저서:인터넷마케팅길라잡이, 인터넷창업길라잡이, 인터넷무역실무 등

레저신문 webmaster@golftimes.co.kr

<저작권자 © 레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쇄하기